

## J. Locke-J.S. Mill의 재산권이론

박 상 수\*

### 目 次

- I. 서 론
- II. J.Locke의 재산권이론
- III. J.S.Mill의 재산권이론
- IV. J.Locke-J.S.Mill의 재산권이론의 함축적 의미
- V. 결 론

### 〈요 약〉

로크가 제시하고 밀에 의해 보완된 재산권이론은 개인주의적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자연권적 재산권이론이며, 19세기와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한 때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생각되기도 하였다. 현재에도 자유주의자와 자유지상주의자 등 우파의 자본주의이론의 명시적이거나 혹은 암묵적인 재산권 토대를 이루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심원하다고 보겠다. 본 논문은 자유주의자와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재산권이론의 이론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로크의 “정부에 관한 두 논문”(Two Treatises of Government)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재산권이론을 세 가지 명제로 축약하였다.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명제는 둘째와 셋째 명제이다. 본 논문은 각각의 명제를 분석하여 현대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 I. 서 론

특정한 사람의 재산은 그 사람에게 관련된 어떤 대상물이다. “이런 관계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며, 그리고 정의에 기초한다.”(D. Hume, 1769, part II, §II) 따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라서 재산권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제도이며, 이런 재산권을 이해하기 위해선 어떤 경제윤리가 기초를 이루는지를 알아야 한다.

재산권과 권리의 세부적인 내용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한다.(권리와 재산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선 Becker, 1977, pp.7-23 참조) 그렇게 다양한 만큼 재산권에 대한 도덕적 기초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도덕적 기초를 이루는 정의는 인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런 합의를 통해서 사람들은 동시에 소유의 안정성에 관해서도 합의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소유의 안정성에 관련된 합의는 모든 경우의 부조화와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도입된다.”(Hume, 1769, part II, §III)

로크가 제시하고 밀에 의해 보완된 재산권이론은 자연권적 재산이론이며, 개인주의적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재산권이론이기도 하며, 19세기와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한때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생각되기도 하였다. 현재에도 자유주의자와 자유지상주의자 등 우파의 자본주의이론의 명시적이거나 혹은 암묵적인 재산권 토대를 이루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심원하다고 보겠다.

본 논문은 자유주의자와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재산권이론의 이론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로크의 “정부에 관한 두 논문”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재산권이론을 세 가지 명제로 축약하였다.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명제는 둘째와 셋째 명제이다. 본 논문은 각각의 명제를 분석하여 현대적인 의미를 찾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II. J.Locke의 재산권이론

로크의 재산권이론은 사실상 자유주의자들의 재산권이론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이론적 기초로서 활용되고 있다. 재산권에 관한 로크의 견해는 “정부에 관한 두 논문”(Two Treatises of Government, 1690) 중 둘째 논문의 §27에 축약되어 있다:<sup>1)</sup>

“(1) 비록 지구와 모든 열등한 창조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모든 사람 각자는 그 자신의 인간을 재산으로 갖는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갖지 않는다. 그의 육체의 노동과 그의 손의 작업은 적절히 그의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2) 그때 자연이 제공했고 자연이 남긴 상태에서 그

---

1) 로크 견해의 인용은 T.I.Cook이 편집한 로크의 저서. Locke, J.(1690). *Two Treatises of Government*. edited with an introduction by T.I.Cook. Hafner Press, 1947에 따른다.

가 무엇을 이동시키든, 그는 그의 노동을 그것과 혼합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어떤 것을 그것에 결합시키며,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자신의 재산으로 만든다. 자연이 그것을 놓아둔 공유 상태로부터 그것이 그에 의해 이동되었으므로, 그것은 이런 노동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공유된 권리를 배제하는, 그것에 참가된 어떤 것을 갖는다. (3) 이런 '노동'은 노동자의 의심할 여지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하면서도 훌륭한 것이 공유로 남겨져 있는 한, 그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그것(노동)이 일단 결합된 것에 대해서 권리를 가질 수 없다."(번호는 필자의 번호)

## 1. 자기 소유권 명제

앞의 인용문은 세 가지 명제로 나누어진다. 첫째 명제는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육체를 소유할 자격이 있으며, 그리고 그 육체로부터 파생되는 노동도 소유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소위 자기 소유권(self-ownership)에 관한 명제라고 볼 수 있으며, 자기 소유권은 "각자가 자기 자신의 육체와 그 능력에 대한 도덕적으로 합법적인 소유자이며, 그리고, 결과적으로, 각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그 능력을 전개하지 않는 한, 각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능력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자유롭다"(G.A. Cohen, 1995, P.67)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육체를 소유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노예상태에 있거나 혹은 권위주의적인 정부 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서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의 개념이다.(소극적 자유와 다음에 언급되는 적극적 자유의 개념에 대해선, 박상수, 2003, pp.114-6 참조) 신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외부로부터 강제를 당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자신의 신체의 자유와 자신의 능력을 자유로이 발휘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물론 여기서 자신의 육체와 그 능력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는 자유가 아니며, 자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비록 우리가 자신의 육체와 그 능력을 소유한다고 하여도, 재산이나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가 곤란하고, 또한 강요된 노동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소위 적극적 자유가 결핍한 경우에는 아무리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자기 소유권이 있다고 하여도 그 소유권은 본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하겠다.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 소유권 명제는 자기 자신의 육체와 육체로부터 결과하는 능력 그리고 육체로부터 파생되는 노동을 소유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의 육체를 소유할 자격이 있다면, 그 육체로부터 파생되는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능력을 소유할 자격이 있으며, 그리고 육체로부터 파생하는 노동

도 소유할 자격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 2. 노동가치 명제

노동을 자신이 소유하는 것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다. 그렇지만 자신의 소유인 노동이 생산한 것에 대해선 어떠한가? 로크는 자연 혹은 자연의 생산물에 노동을 첨가한다면 그것은 노동을 첨가한 사람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이론은 후일 A. Smith와 D. Ricardo에 의해 정교화되고, K. Marx에 의해서 더욱 세련화되었으며, 그리고 20세기의 P. Sraffa에 의해서 거의 완성에 이른 노동가치설이다.

로크의 주장을 살펴보기 위해선 우선 자연은 공유인가에 관한 문제를 알아봐야 한다. 로크는 “신이 ‘인간의 자손들에게 지구를 줬으며’, 그리고 그것을 인류에게 공유로 주었다”(Locke, 1690, §25)고 언급하고 있으며, 그리고 자신의 재산이론은 “사람들이 신이 인류에게 공동으로 준 것의 몇몇 부분을 재산으로 그리고 모든 공동소유자들의 어떤 명백한 계약 없이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를 보이는 것”(ibid., §25)이라고 주장한다.

환언하면 로크는 토지를 포함하는 자연과 자연의 생산물, 즉 도토리, 사슴, 나무 열매 등이 신이 하사한 것이며, 인류에게 공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간은 이런 공유물을 노동에 의해서 자신의 소유로, 즉 자신의 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물론 자신의 재산으로 전환할 때에는 공유자들의 계약이나 승낙 없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만약 공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로크는 “모두에게 공동으로 속하는 것을 그렇게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강도가 아닐까? 그와 같은 승낙이 필요하다면, 신이 인간에게 제공한 풍요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어죽는다”(ibid., §28)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이 자연의 특정한 생산물을 사유화하기 위하여 전 인류의 승낙을 필요로 할 경우 그는 전 인류의 승낙을 전혀 얻을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사유화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된다면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풍요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끊어 죽을 수밖에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로크는 사유화를 함에 있어서 모든 인류의 승낙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말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사유화의 도덕적 정당성이다. 로크는 원칙적으로 “자연이 제공했고 자연이 남긴 상태에서 그(어떤 사람)가 무엇을 이동시키든, 그는 그의 노동을 그것과 혼합(mix)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어떤 것을 그것에 결합(join)시키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이런 혼합과 결합이라는 노동의 과정을 거쳐서 “다른 사람의 공유된 권리를 배제하는, 그것에 첨가(annex)된 어떤 것을 가지며”(ibid., §27: 강조는 필자의 강조), 이런 첨가된 어떤 것이 바로 특정한 사물을 사유재산으로 만든다고 주

장한다. 바로 이것이 로크의 사유화의 논리이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 있는 사물을 이동시킴으로써 그 사물과 노동이 혼합되고, 결합되며, 이런 혼합과 결합의 과정에서 그 사물에 노동이 어떤 것을 첨가한다. 노동이 그 사물에 어떤 것을 첨가했기 때문에 노동자는 그 사물을 소유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크는 유사하게 “그 노동이 그것들(주운 도토리와 수집한 사과)과 공동의 것을 구분한다. 그것(노동)이 모두의 공동의 어머니인 자연이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어떤 것을 그것들에게 부가했으며,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은 그의 사적인 권리가 된다”(ibid., §28: 강조는 필자의 강조)고 주장한다.

로크의 사유화의 도덕적 정당성은 자연의 산물에 더 많은 어떤 것을 부가하였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로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모든 각각의 것에 대한 가치의 차이를 설정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이다..... 인간의 생활에 유용한 지구의 생산물 중에서 9/10가 노동의 효과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매우 겸손한 계산일 것이라고 본 인은 생각한다. 오히려, 만약 우리가 그것들이 우리의 사용에 이르게 됨에 따라 그 물건들을 정확히 추계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관한 몇몇 지출-그것들에서 순수하게 자연에 기인하는 것과 노동에 기인하는 것-들을 합산한다면, 그것들 대부분의 경우에 99/100가 전적으로 노동 때문에 덧붙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것이다.”(ibid., §28: 강조는 필자의 강조)

도토리, 과일, 야생의 사슴 등과 같은 자연의 산물에 더 많은 어떤 것을 부가하는 것(도토리, 과일을 수집하거나, 사슴을 사냥하여 포획하는 것 등)은 노동에 의해서 그 자연의 산물에 가치를 부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노동에 의해서 자연의 산물에 가치를 부가시켰으므로, 즉 가치를 증가시켰으므로, 그 자연의 산물은 노동자의 사유재산이 된다는 것이 로크의 취지이다. 그러면서 그는 생산물의 가치 증가의 9/10, 대부분의 경우에는 99/100가 노동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주장은 §42와 §43에서 더 상세히 부연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로크는 생산물의 가치 증가의 대부분이 노동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고, 토지의 기여는 1/10, 대부분의 경우에는 1/100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런 주장은 후일 A. 스미스와 D. 리카도로 이어지면서 노동가치설이란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고, 이 노동가치설은 로크의 취지와 동일하게 자본주의를 응호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사용되었다. 물론 나중에 리카도파 사회주의자들의 자본가착취이론과 K. 마르크스의 잉여가치설은 노동가치설을 자본주의의 비판의 도구로서 활용하기에 이르렀다.(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Burkitt, 1984 참조)

어떻든 로크는 개인주의적 자본주의를 응호하기 위하여 (후대의 A. 스미스와 D. 리

카도가 했던 것과 똑같이) 노동에 의한 가치 증가만큼이 바로 그 사람의 사유재산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로크는 사유재산을 자연에서 생산되는 생산물과 자연 그 자체인 토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사유화의 도덕적 정당성을 고려하고 있다.

우선 자연의 생산물을 검토해 보자. 만약 도토리, 사슴, 나뭇잎 등이 자연 상태로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사람들에 의해 수집되고 사냥되었을 때, 그것들은 그 사람들의 음식, 의복으로 이용될 수 있고 그에 따라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더욱이 그것이 뺏이나, 가죽 옷, 나뭇잎으로 만들어진 옷으로 가공되었을 때 그것은 더욱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런 가치의 증가는 전부 노동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았다.(ibid., §42) 자연의 생산물이 지천으로 널려 있다면 우리는 자연 상태의 생산물의 가치가 '0'이라고 가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가치 증가가 전부 노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가치 증가에 대한 자연(혹은 토지)의 기여는 전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자연의 생산물, 혹은 수집된 자연의 생산물에 노동을 투입한 사람이 그 결과물에 대해서 소유할 도덕적 자격을 갖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우리는 특정한 재화를 소유할 도덕적 자격을 업적의 원리(principle of desert)에서 찾고 있는데, 이때 업적의 원리는 특정한 사람이 어떤 업적을 성취하였는가에 의해서 소득이 결정되는 원리이다. 물론 업적의 원리에는 매우 다양한 내용을 함축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가치 증가에 대한 기여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로크의 논문에서는 노동이 가치 증가의 대부분을 결정하므로, 그 노동을 제공한 사람이 그 생산물을 소유할 자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로크는 “그(어떤 사람)는 이런 신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그것(지구)의 어느 일부를 정복하고, 같고 그리고 씨 뿌렸으며,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 그의 재산인 어떤 것(노동)을 그것(지구)에 첨가하였다”(ibid., §32)고 언급하면서, 토지의 가치 증가에 대해선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담배나 설탕을 심거나 혹은 밀이나 보리를 뿌린 일정한 크기의 토지와 농사를 짓지 않은 채 공유상태로 있는 동일한 크기의 토지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어떤 사람에게 검토해보라고 하자. 그러면 그는 노동의 개량이 가치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만든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ibid., §40)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의 인용문은 인간이 토지에 노동을 투입하였으며, 그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그는 그 토지를 소유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그때 토지에 가치의 가장 커다란 부분을 덧붙이는 것은 바로 노동이며, 그것 없이는 그것은 거의 어떤 가치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ibid., §43)에 의해 뒷받침된다.

토지가 노동에 의해 개량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그리고 토지가 풍부하게 존재한다면, 그것의 가치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하겠다. “물자들을 생산하는 땅은 기껏해야 가치의 매우 작은 부분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그렇게 작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들 중에서도 자연에 전적으로 방치되고, 목초, 경작 혹은 조림 같은 개량을 전혀 하지 않은 토지는, 사실 있는 그대로, “황무지”라고 불리며; 그리고 우리는 그것의 혜택이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ibid., §42) 즉 개량되지 않은 토지가 무가치하다면, 토지가 가치를 가지려면 노동이 투입되었을 때이며, 그에 따라 노동을 투입한 사람은 그 토지를 소유할 자격이 있다.

### 3. 단서 명제

로크는 사유화와 관련하여,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하면서도 훌륭한 것이 공유로 남겨져 있는 한(at least where there is enough, and as good left in common for others)”(ibid., §27: 강조는 필자의 강조)이라는 단서를 설정하고 있다. 자연의 생산물이든 토지이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하면서도 훌륭한 것이 공유로 남겨져 있는 조건에서 노동을 투입하여 가치를 증가시킨 것에 대해서 사유화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단서의 의미는 원래 자연의 생산물과 자연 그 자체는 공유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침해를 주면서 사유화하는 것은 신의 섭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즉 공유인 자연의 생산물이나 자연 그 자체를 노동에 의해서 사유화할 때 다른 사람 혹은 인류 전체의 “승낙 없이”(ibid., §28) 사유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를 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유발한다면, 로크의 취지대로라면, 다른 사람의 승낙을 얻고서 사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로크의 재산의 규칙은 주목할 만하다. “내가 강조하지 않은 것이 이것이기는 하지만, 본인은 용감하게 이것을 확인한다 - 동일한 재산규칙, 즉 모든 사람 각자는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만큼만 가져야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괴롭히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세계에서 적용될 것이다.”(ibid., §36: 강조는 필자의 강조)

재산의 크기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로크의 견해는 화폐가 존재하지 않는 경제와 화폐가 사용되는 경제로 분류하여 언급될 필요가 있다. 우선 화폐가 존재하지 않는 경제, 특히 자급자족 경제체제에서 로크의 견해를 살펴보자.

우선 도토리, 사슴고기 등과 같은 자연의 생산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재산을 제공하는 동일한 자연의 법칙은 또한 그 재산에 정말로 그 한계를 역시 정한다..... 그것

이 삼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생활에 어느 정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정확히 그만큼을 그는 그의 노동에 의해서 재산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을 넘어서는 부분은 무엇이든 그의 뜻을 넘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다.”(ibid., §31: 강조는 필자의 강조) 재산의 크기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양만큼만 소유하여야 하며, 그것을 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남의 뜻을 침해하는 것이다.(유사한 내용은 §37에도 있다) 사실 자급자족 경제에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남는 것은 결국 부폐하여 없어지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에 노동을 투하하는 것이 되며, 이것을 인식한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자연의 생산물을 습득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물물교환경제에서는 약간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본질적인 면에선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잉여생산물을 다른 물건과 교환함으로써 그 잉여생산물을 부폐하여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면, “그는 어떤 침해도 저지르지 않았다: 그는 공동 재산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의 손에서 어떤 것도 부폐하여 무용지물이 되지 않는 한, 그는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재화의 어떤 부분도 파괴하지 않았다.”(ibid., §46) 물론 교환해서 얻은 물건을 부폐시킨다면 그것은 분명히 타인의 뜻을 파괴시키는 것이지만, 보편적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교환하여 얻는다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토지재산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갈고, 씨 뿌리고, 개간하고, 경작하며, 그리고 그 생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만큼의 토지, 정확히 그만큼의 토지가 그의 재산이다.”(ibid., §32: 강조는 필자의 강조) 자연의 생산물에 대한 재산 규모의 제한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즉 자신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토지가 그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여전히 훌륭하면서도 충분한 것(토지)이 남겨져 있으므로 그리고 아직 제공받지 못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남아 있으므로, 토지의 어떤 일부를 개간함으로써 그것을 사유화하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도 아니다”(ibid., §33: 강조는 필자의 강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항상 단서 조항이 뒤따른다. 그런데 로크는 토지의 부족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영국의 경우에도 개간되지 않은 황무지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신대륙이 있어서 토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자급자족 경제에서는 필요 이상의 토지의 소유는 소유자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자연의 생산물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필요 이상을 소유한 경우 토지의 활용을 위해서 더 노동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더 많은 생산물이 생산되지만, 잉여생산물은 부폐될 것이다. 그리고 물물교환이 가능한 경우에도 잉여생산물을 다른 물건으로 교환한다고 해도 필요 이상을 가지는 것은 결국 부폐로 귀결되면서 낭비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화폐가 없는 경제를 다루었으나, 화폐가 도입되면서 논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로크는 “인간이 썩히지 않으면서 보유할 수 있으며, 상호 승낙에 의해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유용하지만 부패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과 교환할 수 있는 지속적인 어떤 사물”(ibid., §47)을 화폐로 정의했으며, 이런 화폐는 재산을 계속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았다.(ibid., §48)

재산축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로크는 “그(어떤 사람)의 공정한 재산의 경계를 넘는 것은 그의 소유의 과다에 있지 않고, 어떤 것을 쓸모없게 부패시키는 데에 있다”(ibid., §46)라고 주장하면서, 부의 불평등에 대해서 호의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다. 예컨대 그는 “금과 은은 사람들의 승낙에 의해서만 그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서 저장할 수 있는 과다한 금과 은 - 이런 금속은 소유자의 손에서 부패 하지도 부식하지도 않는다 - 을 교환으로 수령함으로써, 암묵적이면서 자발적인 승낙에 의해서, 사람들은 한 사람이 자신이 토지의 생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토지를 공정하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발견하였으므로, 그들이 토지의 불비례적이며 불평등한 소유에 동의했다는 것은 명백하다”(ibid., §50: 강조는 필자의 강조)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토지의 불평등한 소유가 화폐의 도입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토지의 과다 보유는, 그런 토지로부터 생산되는 생산물들이 부식되거나 부패되어서 낭비되지 않는다면, 신의 섭리에도 위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몫을 침해하지도 않으며, 그에 따라 도덕적 정당성을 획득한다고 볼 수 있다. 로크는 결론적으로 “(소유할) 자격에 관해서 다툴 이유가 전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그것(노동)이 제공하는 소유의 과다에 대해서도 어떤 의문도 있을 수 없다”(ibid., §51)고 주장하면서, 재산권의 절대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 III. J.S. Mill의 재산권이론

밀은 로크와 마찬가지로 현재 제도를 옹호하면서, 부의 불평등을 합리화한다. 예컨대 그는 “노동자들이 그 조상들이 저축한 사람들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진실이지만, 그 조상들이 저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서 노동자들이 더 부유해졌다는 것도 진실이다. 노동자들은, 비록 유증 받은 사람들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득을 공유하고 있다”(Mill, 1896, p.279: 강조는 필자의 강조)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 진보의 현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추구되는 목표는 개인적 재산 제도의 전복이 아니라 그것의 개선이며, 그리고 그 이득에 대한 그 공동체 구성원 모

두의 완전한 참여이다”(ibid., p.277)라고 주장한다.

사유재산의 원리에 대해서는 로크의 견해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재산에는, 각자가 선택한다면 어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생산한 것을 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것을 수취하고 즐길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더불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각자의 권리, 그 능력에 의해 자신이 생산한 것에 대한 각자의 권리, 그리고 공정한 시장에서 그 것과 교환하여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에 대한 권리 등이 함축되어 있다”(ibid., P.281: 강조는 필자의 강조) 그는 자기 자신의 육체와 그 노동에 대한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자신의 노동에 의해서 생산한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교환의 권리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밀은 자신이 생산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권리, 즉 유증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그는 상속이나 유증이 노력 없이 특정인을 부유하게 하여 재산을 낭비하게 하는 것을 제한하길 원했다. 이렇게 형성된 잉여재산은 공적인 용도에 이용함으로써 대다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ibid., pp.289-290) 이런 견해는 벤담류의 급진철학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로크의 견해에서 애매모호한 내용을 더욱 상세화한 부분이 토지재산에 대한 주장이다. 우선 기본 원칙으로는 자연 혹은 토지의 생산물, 즉 노동의 도움을 받지 않는 토지의 생산물은 사유재산의 원리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토지재산을 사유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용권만을 일정기간 동안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예컨대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만약 토지가 자연으로부터 전적으로 그것의 생산능력을 유도하고, 근면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유도하지 않는다면, 혹은 만약 각각의 근원으로부터 유도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존재한다면, 자연의 선물을 개인들에 의해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정의의 극치일 것이다. 농업에서 토지의 사용은 사실상, 잠시 동안, 당연히 배타적이어야 하며; 토지를 갈고 씨를 뿐만 동일한 사람은 수확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고대 독일에서처럼 그 토지는 한 계절 동안만 점유될 수 있거나; 혹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분배될 수 있거나; 혹은 국가가 보편적인 지주가 되며 그리고 경작자는 국가의 임대 혹은 의지에 따라 소작인이 될 수 있다.”(ibid., pp.291-2)

그러나 로크가 언급했던 것처럼 토지의 생산성의 향상, 혹은 토지의 가치 상승은 사실 근면의 산물이며, 그리고 경작을 위한 노동의 투입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결과는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토지의 사유화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경작은 또한 건물과 울타리를 필요로 하며, 그런 것들은 전적으로 노동의 생산물이다. 이런 근면의 열매는 짧은

기간 동안에 수확될 수 없다. 노동과 지출은 즉각적이며, 그 혜택은 여러 해에 걸쳐서, 아마도 모든 미래에 걸쳐서 퍼져 있다."(ibid., p.292)

이런 논리가 "경제적 관점에서, 토지 재산의 정당성을 형성하는 이유들이다.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개량자인 경우에만 이 이유들이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ibid., p.293; 강조는 필자의 강조) 특히 당시의 영국이나 에이레에서 토지 소유주가 경작자인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한적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그 나라들의 토지자산의 소유는 부정의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가 사유재산으로 인정된다면 그런 "사유화는 전적으로 일반적인 편의의 문제이다."(ibid., p.295)

따라서 "토지의 경우 명시적인 선(positive good)을 생산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개인에 대해서는 어떤 배타적인 권리도 허용되어선 안 되며."(ibid., p.297) 그리고 특히 "토지가 경작될 의지가 없을 때, 그것이 어떻든 사유재산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훌륭한 이유도 일반적으로 제시될 수 없다."(ibid., p.298)

그는 결론적으로 "토지와 관련해서, 그(소유주)가 토지를 가지고 하는 것과 그가 절제하는 것 모두에서, 그는 그의 이해관계와 체력을 공공선과 조화롭게 만들도록 할 도덕적 의무가 있으며, 그리고 경우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합법적으로 그렇게 조화롭게 만들도록 강제 당해야 한다. 일반 인류는, 그들이 나머지에게 떼어준 목적에 부합하는 만큼, 그들이 살고 있는 지구의 흙에 대한 인류의 위초적인 요구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ibid., p.298; 강조는 필자의 강조) 즉 공공 목적을 위해서는 토지의 수용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작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토지는 얼마든지 소유를 제한하거나 몰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위 재산에 대한 신성불가침의 원리가 토지에 대해선 적용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 밀의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그는 토지 문제에 대해선 "어떤 새로운 조치를 만들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ibid., p.295)"고 언급하고 있다.

#### **N. J.Locke-J.S.Mill의 재산권이론의 합축적 의미**

로크-밀의 재산권이론은 4가지 합축적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 단서조항과 재산규모의 제한에 관련된 논리적 비일관성에 관한 비판이다. 로크의 단서 명제는 상당한 논란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충분히 남기지 않는 것은 남의 것을 강탈하는 것이며, 그리고 많은 것을 갖는 것은 곧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다. 단서조항과 재산규모의 제한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Waldron(1979, pp.320-21)은 단서 조항과 재산규모의 제한을 분

리하여 로크의 재산이론을 논의하면서, 로크의 재산논리의 비밀관성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규모의 제한은 화폐가 없는 경제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명제이기 때문에 로크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단서조항에서 유추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화폐 없는 경제에서 필요 이상의 재화의 생산과 보유는 부패로 귀결되므로,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노동을 한 것이 된다.

화폐가 존재하는 경제에서는 생산된 것이 화폐로 교환되어서 무한한 축적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교환된 생산물들은 수요한 사람들이 당연히 소비할 것으로 부패되어서 낭비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세이의 법칙이 확실히 적용된다고 가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로크의 재산의 규칙(Locke, 1690, §36)은 사실상 세이의 법칙이 적용되는 고전학파의 경제에서는 당연히 적용되는 재산취득의 원리인 셈이다.

둘째로 단서 명제는 당시의 기득권층을 옹호하기 위하여 제시되었다. 로크의 둘째 논문 §27에 있는 단서조항,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하면서도 훌륭한 것이 공유로 남겨져 있는 한”은 특정인의 사유화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을 때 공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그런 사유화가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크는 당시의 사유재산재산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연권의 하나인 재산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서조항과 재산권의 원리를 활용하고 있다. 로크는 당시에 토지가 영국의 경우에 황무지로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리고 비록 사유화로 인해 영국에서는 토지가 희소하다고 해도 신대륙에는 아직도 많은 토지가 무한히 남아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유화와 관련해선 단서조항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화폐경제에서 화폐를 통한 부의 축적, 그리고 토지를 통한 부의 축적은 생산물의 부패를 전혀 유발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토지도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화폐와 토지를 통한 부의 축적은 그런 관점에서 정당하다고 보았다.

셋째로 로크의 이론은 공급측면의 재산권이론이다. 로크는 사유화의 윤리적 근거를 노동에서 찾고 있다. 그는 노동이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킨다고 보았으며, 그에 따라 가치 증가에 해당하는 것이 노동을 투입한 사람의 몫이라고 보았다. 이런 견해는 업적의 원리이며, 이때 업적(desert)은 가치 증가에 대한 기여라고 볼 수 있으며, 가치의 증가가 노동 투입에 의존하므로 노동이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재화의 가치가 노동을 투입한 크기에 따라 증가한다면, 투입된 노동량에 따라 특정한 재화에 대한 소유 몫이 결정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투입노동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면, 재화에 대한 노동자 각각의 몫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때 각자의 소유 뜻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재화의 가치는 투입노동량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는다. 재화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므로, 가치도 공급측면만이 아니라 수요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로크의 재산권이론은 노동자가 창조하지 않은 것, 즉 수요측면에 의해 가치가 증식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는 어떤 윤리적 정당성도 제시할 수 없다.

예컨대 Fried(1995)는 로크의 견해, 특히 재산의 취득에 관련된 이론을 수용하고 있는 노직(Nozick)의 '이전의 정의'(Justice in Transfer)의 이론이 얼마나 근거가 박약한 이론인지를 밝히고 있다. 그는 시장을 통한 가치 증식에 대한 특정인의 권리가 윤리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보았다.(Fried, 1995, p.234 이하) 노직의 취득의 정의이론이 로크적 노동이론을 수용하고 있지만, 이런 취득의 정의가 합당하다고 해도, 일단 취득된 재산이 이전할 때에는 가치의 증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의 가치 증식을 소유자가 갖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로크의 견해가 공급측면에 기인하는 이론이라는 데에 있다. 가치를 창조한 사람이 그 가치 창조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로크의 견해는 정말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일단 생산된 재화가 시장을 거치면서 가치가 증식될 때 그 가치의 증가에 대해서는 누가 그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선 로크의 재산권이론이 전혀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로크의 견해를 부연한 밀의 토지 소유 제한의 함축적 의미이다. 로크는 토지의 소유에 대해서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생산할 수 있는 크기의 토지만을 소유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화폐의 발견은 그런 토지의 소유를 확대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하였다. 생활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생산하고, 잉여 생산물을 외부의 사람들과 교환함으로써 화폐를 취득하여 그것을 부의 축적수단으로 삼게 된다.

그러나 로크는 토지가 희소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밀은 토지의 희소성이 발생하는 경우에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활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에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급진적인 주장은 현대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 V. 결 론

로크와 밀의 재산권이론은 세 가지 명제로 축약될 수 있다. 첫째는 자기 소유명제이다. 모든 사람 각자는 자신의 육체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육체로부터의 노동도 소

유하고 있다. 각자가 자유로운 인간이라면,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노동이 자신의 소유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다.

둘째 명제는 노동가치 명제이다. 로크와 밀은 노동이 가치를 창조하며, 그런 가치의 창조는 재산소유권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한다고 보았다. 특히 로크는 재화의 가치는 거의 대부분 노동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노동을 제공한 사람이 그 재화를 소유할 자격이 있다고 하겠다.

셋째 명제는 단서 명제이다. 로크는 둘째 명제 하에서 사유화가 타인에게 손해를 주지 않으면 그런 사유화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았다. 물론 로크의 단서 명제는 토지가 무한히 남겨져 있는 당시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런 명제는 현대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이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사유재산권을 자연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이론적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이론은 두 가지의 중대한 결점을 갖고 있다. 첫째는 토지가 무한대로 존재하는 세계를 가정하고 있다. 로크의 시대에는 신대륙의 발견으로 토지가 인구에 비해 남아도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황금시대는 이미 경과했으며, 현대는 토지를 통해서 부의 축적과 증가가 이루어지는 시대이기도 하다.

둘째로 로크-밀의 재산권이론은 공급측면을 중시하는 이론이며, 수요에 의해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에는 부적절한 이론이 되고 있다. 순수하게 가치가 노동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재산권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대단히 훌륭할 수 있으나, 가치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 혹은 노동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가치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는 재산권의 도덕적 정당성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렇지만 로크-밀의 재산권이론은 현대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는 재산권의 원리이다. 재산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만큼만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폐의 사용으로 부패할 가능성은 크게 축소되었으나, 화폐의 사용은 부의 무한한 축적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취득의 기본 원칙은 무한한 부의 축적에 대한 도덕적 제한을 가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로크는 무한한 토지를 가정하였으나, 밀은 토지의 희소성이 중대하는 상황에서 로크의 이론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는 토지를 활용할 수 있고 활용하고 있는 사람만이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로크의 자연권적 재산권에서도 토지의 소유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참고문헌

- 박상수(2003), 『경제철학』, 제주대학교 출판부.
- Becker, L.C.(1977), *Property Rights: Philosophical Foundations*, Routledge & Kegan Paul.
- Burkitt, B.(1984), *Radical Political Economy: an Introduction to the Alternative Economics*, Wheatsheaf Books Ltd.
- Cohen, G.A.(1995), *Self-Ownership, Freedom, and Equ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ied, B.(1995), "Wilt Chamberlain Revisited: Nozick's 'Justice in Transfer' and the Problem of Market-Based Distribution",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vol.24, pp.226-45.
- Hume, D.(1769), *A Treatise of Human Nature: Book III. Of Morals*, <http://socserv2.socsci.mcmaster.ca/~econ/ugcm/3li3/hume/treat.html>
- Locke, J.(1690), *Two Treatises of Government*, edited with an introduction by T.I.Cook, Hafner Press, 1947.
- Mill, J.S.(1896),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With Some of Their Applications to Social Philosophy*, D. Appleton.
- Nozick, R.(1974), *Anarchy, State, and Utopia*, Blackwell.
- Waldron, J.(1979). "Enough and as Good Left for Others." *Philosophical Quarterly*, pp.319-28